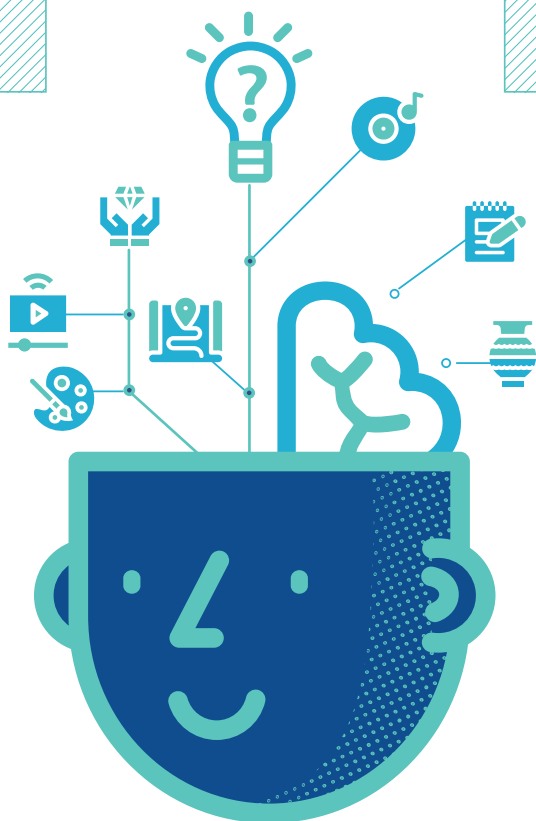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바로알기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바로알기



CONTENTS

PART 1 **창작물 공모전 지침 올바르게 이해하기** 10

1. 목적 및 제정 배경	10
2. 적용 범위 및 저작권 일반	
가. 적용범위	11
나. 저작물	11
다. 저작권	13
라. 저작자	15
마. 관계 법령	16
바. 주요 내용	18

PART 2 **한 눈에 확인하는 이것만은 꼭!** 22

PART 3 **질문과 답변으로 알아보는 창작물 공모전 지침** 28

제1장. 저작권 일반

1. 저작권 등록	28
제가 만든 작품을 공모전에 응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권 등록을 해야 발생하나요?	
2.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30
저작권과 저작재산권은 어떻게 다른 것이며,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무엇인가요?	
3. 2차적저작물작성권	31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 무엇인가요?	
4.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의 차이	32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제2장. 공모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공모전의 종류

5. 아이디어 공모전	34
-------------------	----

중앙행정기관 사회복지 분야 담당자입니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복지 분야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창작물 공모전 지침이 적용될까요?

6. 표어, 슬로건 공모전.....36

공공기관 홍보 담당자입니다. 기관 홍보를 위해 표어, 슬로건 공모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표어, 슬로건 공모전도 창작물 공모전 지침이 적용될까요?

7. 순수 창작물 공모전.....38

웹툰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친한 친구가 자신이 썼던 소설내용을 토대로 웹툰을 만들어 공모전에 응모해 보라고 합니다. 공모요강에 「응모작품은 응모자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친구 말처럼 응모해도 될까요?

[2] 공모전과 저작권 귀속

8. 응모작의 저작권 귀속.....40

공모전 요강에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와 동시에 주최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주최자가 저작자가 되는 것인가요?

9.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42

지역문화센터 담당자입니다. 금번에 창작물 공모전 지침에 따라 극본 공모전을 진행하고 공연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공모전 요강에 ‘공모전 주최자와 수상자가 수상작의 저작 재산권을 공동소유 합니다’라고 기재해도 될까요?

10. 미수상작의 저작권과 사용권.....43

공모전에 응모했지만 수상하지 못한 미수상작의 경우 저작권과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11. 공동저작물과 저작권 귀속.....44

공모전에 팀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른데 팀원 중에 누가 저작자가 되나요?

[3] 공모전 수상작의 활용

12. 주최자와 수상자가 별도의 합의를 해야 하는 이유.....46

주최자가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고자 할 경우, 공모전 요강 외에 입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3. 공모전 상금의 의미.....47

공모전을 주최하여 수상작을 발표하였고, 그에 대한 상금을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수상작 이용(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4]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

14. 저작권 양도계약서.....48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입니다. 공모전 수상 후 수상자와 별도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예시가 있을까요?

15. 2차적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허락 계약.....49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은 향후 2차 가공 등을 거쳐 활용될 수 있다”고 기재하였는데,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 또다시 별도의 합의를 진행해야 할까요?

16. 미성년 수상자와의 계약시 유의사항.....50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포스터 공모전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추후 수상자인 초등학생과 저작재산권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17.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52

공공기관 공모전 담당자입니다.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받는 내용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공모전을 개최하여도 불공정 소지가 존재할까요?

18. 이용 허락 기간의 기준54

이용허락 기간 내에 게재한 수상작은 이용허락 기간이 지나도 별도로 회수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게재해도 될까요?

19. 정당한 이용 대가 산정의 기준55

수상작 발표 후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대한 대가에 대해 협상 중입니다. 수상작의 저작물 이용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5]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공모전에 응모하기

20. 생성형 AI를 이용한 산출물.....56

최근에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AI 산출물인 미술품들을 공모전에 제출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제가 직접 그림 그리지 않았지만 미술 공모전에 제출해도 될까요?

21.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한 창작물58

홍보 영상공모전에 제출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짧은 영상을 삽입하여 제출해도 될까요?

22. 공유·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창작물.....59

응모작의 일부에 공유저작물, 공공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3. 디자인 플랫폼 콘텐츠를 활용한 창작물	60
--------------------------------	----

웹툰 작가입니다. 최근 진행 중인 웹툰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려고 하는데 이미지나 디자인 플랫폼의 무료 콘텐츠들을 활용해도 될까요?

[6] 기타 공모 요강의 해석

24. 다른 공모전 중복 응모 문제	61
---------------------------	----

24-1. 공모전에서 입상한 경우 해당 수상작을 다른 공모전에도 응모할 수 있나요?

24-2. 수상작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응모작을 다른 공모전에 제출할 수 있나요?

25. 응모자의 저작물 이용 관련 질문	63
-----------------------------	----

공모전 응모자가 응모작을 SNS에 공유해도 되나요? SNS에 공유해도 된다면, 공유 시점은 언제라도 상관이 없나요?

PART 4

부록

부록1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안내	66
------------------------	----

부록2 저작권 조정제도 안내	68
-----------------------	----

부록3 창작물 공모전 지침	70
----------------------	----

부록4 저작권 표준계약서(4종)	83
-------------------------	----

부록5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32628호)	103
--	-----

부록6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모전의 금액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2022-58호)(고시2022-58호)	107
---	-----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바로알기’를 펴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4년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발간하고 2020년에 이를 개정·배포하여, 공모전 응모자(창작자)와 주최자(이용자)간의 공정한 저작재산권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공모전 진행 과정에서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참고하거나 관련 내용을 질의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공모전 주최자와 응모자들은 지침에 대한 높은 관심과 더불어,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해설과 안내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 안내서는 공모전 주최자가 공모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응모자가 창작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모전 주최자와 응모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저작권법 및 관련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건강한 창작물 공모전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P A R T

1





**참작물 공모전 지침
올바르게 이해하기**



참 작 물 공 모 전 지 침 바 로 알 기



창작물 공모전 지침 올바르게 이해하기

1. 목적 및 제정 배경

다수의 공모전에서 응모작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주최자에게 귀속시키는 불공정한 관행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공모전 주최 측이 응모자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간다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고 응모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한편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창작자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창작자주의 원칙에 따르면, 공모전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입상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므로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공모전 목적에 합당한 이용허락의 조건(이용 방법·기간·대가 등)을 사전에 설정하여 공모전 요강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의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전제로, 응모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양도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창작자인 응모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으며, 2020년 이를 개정한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응모작(수상작)에 대한 모든 권리를 주최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한 공모전 요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관련하여 응모작(수상작)의 모든 권리가 응모자(수상자)에게 귀속되도록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본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공모전 주최자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모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나아가 창작 활동의 활성화와 문화 산업 발전이라는 목적에 기여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관련 적용 법령

-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지식재산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지식재산 기본법 제2조 제2호).
- ② 정부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지식재산 기본법 제19조).
- ③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 제1조).
- ④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⑤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2. 적용 범위 및 저작권 일반

가. 적용범위

동 지침은 공모전에 출품되는 응모작(저작물)에 적용되며, 공모전 주최자는 지침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응모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지침 II. 적용범위).

나. 저작물

일반적으로 공모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모작에 대한 권리는 공모 유형에 따라 저작권,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그 밖에 아이디어 등에 대한 권리로 분류됩니다. 이 중에서

본 지침은 ‘창작물’, 즉, 저작권법상의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호)인 ‘저작물’에 대한 공모전에 적용됩니다.



저작물의 예시(저작권법 제4조 제1항)

- ① 소설 · 시 · 논문 · 강연 · 연설 ·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② 음악저작물
- ③ 연극 및 무용 · 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④ 회화 · 서예 · 조각 · 판화 · 공예 ·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⑤ 건축물 ·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⑥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 ⑦ 영상저작물
- ⑧ 지도 · 도표 · 설계도 · 악도 ·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의 보호는 저작물의 ‘표현’에만 미치고 그 소재가 된 ‘아이디어’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 대법원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등).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모전 대상 중 ‘아이디어’ 그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모전의 대상에 아이디어와 표현이 혼재될 수 있는바,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공모전 주최자는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하여도 본 지침이 적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획안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창작적 표현형식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 12. 17. 선고 2016다208600 판결). 또한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일지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로 보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¹⁾

다.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²⁾ 그런 점에서 별도의 출원·등록절차를 요하는 산업재산권과는 다릅니다(무방식주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저작권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갖습니다. 이 중 저작재산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저작재산권을 이전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이용방법 및 조건을 정하여 이용허락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³⁾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작재산권 자체는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작재산권 양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인격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재산권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⁴⁾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3)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4)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인격권]

종류	저작인격권(제11조~제13조) 내용
공표권 (제11조)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
성명표시권 (제 12조)	저작물 등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
동일성유지권 (제13조)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에 대한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저작재산권]

종류	저작재산권(제16조~제22조) 내용					
복제권(제16조)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권리					
공연권(제17조)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					
공중송신권 (18조)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 또는 이용에 제공할 권리					
	<table> <tr> <td>방송</td><td>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td></tr> <tr> <td>전송</td><td>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포함)</td></tr> <tr> <td>디지털 음성송신</td><td>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할 권리(전송 제외)</td></tr> </table>	방송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	전송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포함)	디지털 음성송신
방송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					
전송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포함)					
디지털 음성송신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할 권리(전송 제외)					
전시권(제19조)	미술·사진·건축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배포권(제20조)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					
대여권(제21조)	상업용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2차적저작물 작성권 (제22조)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에 의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					

참고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또는 양도 계약을 진행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저작권 표준계약서’(4종)⁵⁾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참고]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중 저작권양도와 이용허락 표준계약서는 '저작권 표준계약서(4종)'이라는 제목 아래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양도 계약서',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양도 계약서',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4종의 표준계약서에 대해 쉽게 풀어놓은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이라는 해설서도 함께 게시(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 자료) 발간자료 > 조사·연구)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 저작자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인 저작자에게 최초로 귀속됩니다. 저작물 창작을 위한 동기 부여, 자료 제공, 단순한 오류 수정 및 비용 제공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자가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이라면 그 저작권은 법인·단체가 보유하게 됩니다(저작권법 제9조 참조).⁶⁾ 공동 창작의 의사를 가진 2인 이상이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 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1호).⁷⁾ 따라서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복수의 저작자가 관여하여 저작물을 창작하였을 때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결합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결합저작물은 각 저작자가 단독으로 본인이 창작한 저작물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7)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마. 관계 법령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의 경우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⁹⁾ 이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공모하는 유형·형태가 모두 공모전에 포함되는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범위

- "공모전"이란 행정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考案), 창작물 등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상금·상품 등을 수여하는 경진 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모 대회를 말함.
- "행정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함
- 적용 제외 대상
 1. 공모전을 시행하는 행정기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전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적 목적의 공모전
 3. 상장을 수여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상금 또는 상품만을 수여하는 공모전

8) 이 규정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시행계획의 수립, 심사위원회 구성 등 주로 공모전 운영 관련 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9) 한편,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모전의 금액 기준에 관한고시¹⁾에 따라 개별 수상자에 대해 예정된 최고 시상 금액(상금과 상품 가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규정 적용이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32628호, 2022. 5. 9., 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각 공모전별로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공모전 심사위원회는 응모작의 심사 및 수상후보작의 선정, 부정행위의 검증 및 판단, 수상작의 결정, 수상후보작 및 수상작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그 밖에 공모전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공모전 응모작에 대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범위는 공모전 응모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을 말하나, 경미한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합니다.



- 가.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
- 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
- 다. 연구자료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 추가 · 삭제하여 응모작의 내용을 왜곡하는 변조 행위
- 라.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중복응모를 제한하는 공모전에 제출하는 부당한 중복응모 행위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공모전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행정기관의 장은 응모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해야 하며, 효율적인 검증을 위하여 수상후보작에 한정하여 부정행위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수상후보작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10일 이상 공개하고 부정행위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모전 운영 방안으로 1. 공모전 시행 계획의 수립 2. 공모 전의 공고 3.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4. 수상후보작 검증, 5. 수상작의 공개 6. 수상작 결정이후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경우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주요 내용

[공모전에서의 권리관계]

1. 저작권 귀속

- ①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저작권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저작권법 제10조).
- ② 공모전 주최자는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 공모전 주최자는 별도의 반환 요청이 없는 한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
- ③ 공모전 주최자는 응모작을 접수할 때 응모작 반환 여부에 대한 응모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응모자가 저작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모자에게 반환하되, 반환과 관련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가 부담할 수 있다.

2. 이용허락

- ① 공모전 주최자는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해당 입상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응모자는 공모전에 응모함으로써 추후 입상할 경우 주최자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모전 주최자는 공모전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이용허락의 조건(독점 또는 비독점 이용·이용 방법·기간·횟수·장소·이용매체·이용허락의 대가 등)을 결정하여 공모전 요강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허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대가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상금·상품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 ② 공모전 주최자가 공모전 요강에서 공고한 이용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입상작을 이용하거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입상자와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
- ③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 발표 후 입상작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대가 지급을 전제로 별도의 합의를 통해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해당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

3. 정당한 대가

- ①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을 이용하는 경우, 입상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대가는 거래 관행 및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공모전 주최자가 공모전에 투자한 비용과 입상자가 공모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점들을 참고할 수 있다.
- ② 공모전 요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적 범위 내에서의 입상작 이용의 경우 정당한 대가는 시상금 또는 상품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모전 요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용 범위는 공모전의 주최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4. 저작인격권의 존중

- ①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을 이용할 때에는 입상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공모전 주최자는 원칙적으로 저작자인 입상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입상작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의 저작권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다.
- ②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상작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성명표시의 예외, 동법 제13조 제2항에서의 변경에 대한 권리)에는 예외적으로 저작인격권이 제한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입상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분쟁해결

- ① 공모전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문언의 내용·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 ② 응모자나 공모전 주최자는 공모전에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모전 주최자는 응모자가 공모전의 저작권에 관한 이의 제기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의신청 절차 및 창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공모전 주최자는 공모전의 응모자가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공모전 요강에 주의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P A R T





**한 눈에 확인하는
이것만은 꼭!**



창 작 물 공 모 전 지 침 바 로 알 기

한 눈에 확인하는 이것만은 꼭!

저작권 귀속

응모작의 저작권 일체를 주최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공모전 요강? X

■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저작권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원시적으로 응모자(창작자)에게 있으므로(저작권법 제10조), 공모전 주최자가 저작권을 갖기 위해서는 저작권 양도 등 추후 별도의 합의를 해야 합니다.

• 잘못된 예시

-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주최자에게 있다.

• 잘된 예시

-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저작권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응모자(창작자)에게 있다.

-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저작권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응모작 수상 후에도 입상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 주최자는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을 정당한 대가 지급을 전제로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다. 이때, 양도 여부, 범위 및 그 대가에 대해서는 추후 입상자(저작자)와 별도 합의를 통해 정한다.

- 주최자는 입상작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대가 지급을 전제로 저작권재산권을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다. 이때, 양도여부, 범위 및 그 대가에 대해서는 추후 입상자(저작자)와 별도 합의를 통해 정한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입상작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공모전 주최자가 이용허락이나 양도받은 것으로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공모전 요강? X

■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입니다(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이용허락 또는 양도가 필요한 경우 추후 별도의 합의를 해야 합니다.

• 잘못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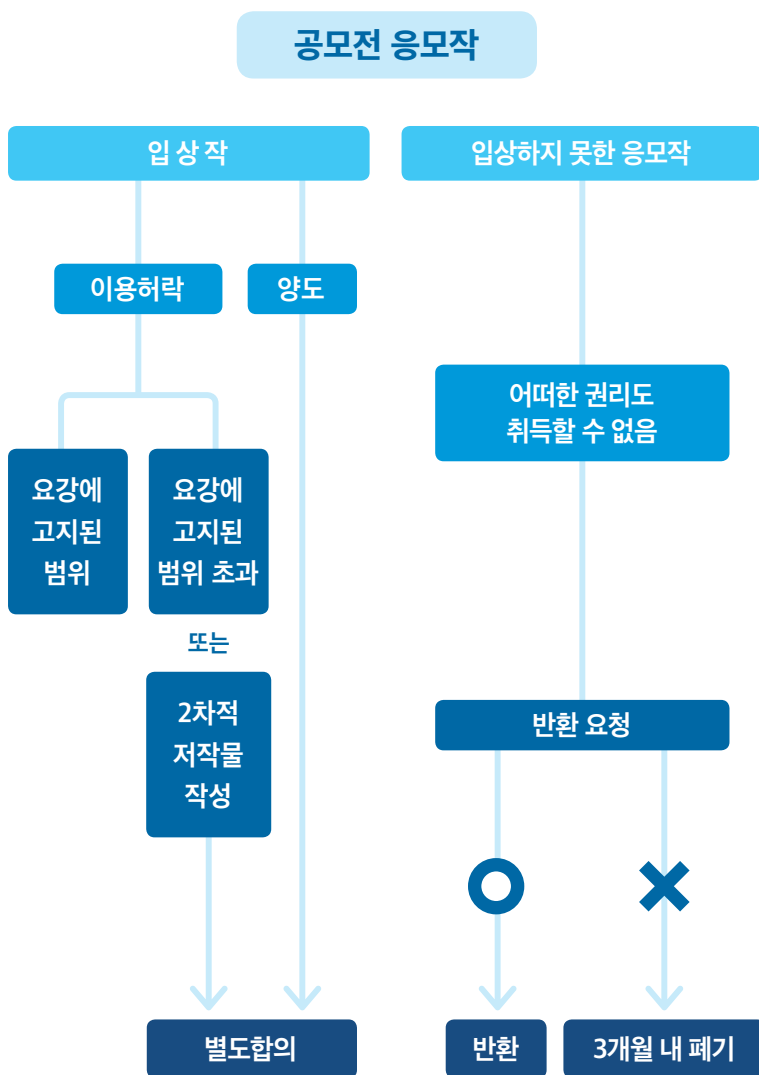
- 주최자는 입상작을 필요에 따라 2차적저작물로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입상작은 향후 2차 가공 등을 거쳐 활용될 수 있다.

• 잘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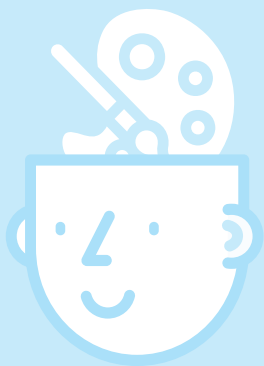
- 주최자는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입상작을 복제 및 전송할 수 있고, 입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한 이용허락을 얻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 주최자는 입상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 주최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입상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입상작을 이용한 수익 창출 행위를 할 수 있다.
- 주최자는 공모전 요강에 공고된 범위를 넘어 입상작을 이용할 경우 저작자와 별도로 합의 하여 정한다.



공모전 요강 작성 전 확인 사항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바로알기





P A R T

3





**질문과 답변으로 알아보는
창작물 공모전 지침**



창 작 물 공 모 전 지 침 바 로 알 기

질문과 답변으로 알아보는 창작물 공모전 지침

제1장. 저작권 일반

1

저작권 등록



제가 만든 작품을 공모전에 응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권 등록을 해야 발생하나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발생에 어떠한 절차나 방식(예를 들어 등록·납본·기탁·공표 등)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으며 저작물을 창작한 시기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조).¹⁰⁾ 이를 이른바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저작권의 발생에 있어 무방식주의를 취하면서도 저작권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¹¹⁾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공표 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등록을 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10) 저작권법 제11조(저작권)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1) 저작권법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국적·주소 또는居所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저작권법에 따라 성명,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 공표연월일을 등록한 경우, 성명이 등록된 자가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고, 등록된 연월일에 각각 저작물이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할 때는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 제3항).¹²⁾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 변동(양도, 질권설정, 출판권 설정 등)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권리 변동 사실을 부인할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권리 변동 사실 및 출판권 설정 등을 등록하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저작권법 제54조).¹³⁾ 또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자는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과실에 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적 추정을 받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¹⁴⁾ 마지막으로, 저작권이 등록된 경우, 실제 손해액이나 법원이 정한 손해액에 같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¹⁵⁾ 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¹⁶⁾

12) 저작권법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3) 저작권법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14)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5)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

16)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들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법원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같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들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2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저작권과 저작재산권은 어떻게 다른 것이며,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무엇인가요?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됩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참조).¹⁷⁾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참조).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이에 속합니다. (저작권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참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참조).¹⁸⁾ 반면에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참조).¹⁹⁾ 따라서 저작권을 전부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고 저작재산권만이 전부 양도됩니다. 저작자는 저작권 전부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의 경우라도 특약이 없는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참조).²⁰⁾ 따라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양수인이려면 해당 내용을 특약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17)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18) 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19)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20)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3

2차적저작물작성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 무엇인가요?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하며,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참조).²¹⁾ 소설·시나리오를 영화화하는 경우나 기존의 노래를 편곡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22조).²²⁾ 이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고 하며, 2차적저작물을 작성(제작)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거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 받아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이기 때문에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사람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안에 내재된 원저작물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자 외에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에게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1)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2)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4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의 차이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저작권법 제46조 참조)²³⁾과 저작재산권 양도(저작권법 제45조 참조)²⁴⁾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권리 이전이 일어나지 않고, 단순히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저작재산권 양도를 하는 경우, 권리 이전이 일어나며 저작재산권자가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설 작가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소설에 대해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그 작가는 여전히 자신의 소설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입니다. 그러나 소설 작가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그 작가는 더 이상 자신의 소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은 사람만이 저작재산권자로서 그 소설을 복제·배포·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 및 이용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설을 쓴 작가라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양도 후 자신의 소설을 이용하려면 저작재산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간혹 계약서의 내용이 모호하여 해당 계약서를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이라고 보아야 할지 아니면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이라고 보아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

23)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24)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참조).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1]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6. 1. 선고 94카합3724 제51부판결

저작물 이용대가를 판매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괄지급하는 형태로서 소위 매절계약이라 할 것으로, 그 원고료로 일괄지급한 대가가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소명이 없는 한 이는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계약이라고 볼이 상당하므로 위 계약이 저작권양도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신청인의 위 주장을 위 출판권에 기한 침해금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취지로 보더라도, 출판권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3년 간 존속하는바, 신청인의 출판권은 위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제2장. 공모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공모전의 종류

5 아이디어 공모전



중앙행정기관 사회복지 분야 담당자입니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복지 분야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창작물 공모전 지침’이 적용될까요?



아이디어 공모전은 원칙적으로는 ‘창작물 공모전 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저작권법 제2조제1호), ‘창작물 공모전 지침’은 이와 같은 저작물을 공모하는 공모전에 적용됩니다.²⁵⁾아이디어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대법원 2000.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원칙적으로 아이디어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바, 아이디어 공모전의 경우에는 ‘창작물 공모전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모전의 대상에 아이디어와 표현이 혼재 될 수 있는바,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주최자는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하여도 본 지침이 적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5)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6

표어, 슬로건 공모전

Q

공공기관 홍보 담당자입니다. 기관 홍보를 위해 표어, 슬로건 공모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표어, 슬로건 공모전도 ‘창작물 공모전 지침’이 적용될까요?

A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공모하는 경우 ‘창작물공모전 지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표어, 슬로건과 같이 짧은 문장에도 저작물성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 중에 짧은 광고 문구에 대한 저작물성을 부정한 사례(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나15229판결 참조)도 있으며, 앨범표지에 기재된 짧은 문구에 대한 저작물성을 인정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례들을 참고하면, 짧은 문장에 대한 저작물성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표어, 슬로건 공모전 주최자가 당해 공모전의 표어, 슬로건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창작물 공모전 지침’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공모전 주최자가 당해 표어, 슬로건 공모전에 접수되는 작품들이 저작물성이 없다고 단정할 만한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참고판례

■ 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나15229 판결

원고가 제안서에 예시한 광고문구와 피고가 사용한 광고문구는 모두 ‘맛있는 온도’를 ‘눈으로 알 수 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문구가 짧고, 의미가 단순하여 그 표현형식에 위 내용 외에 어떤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광고문구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전제로서의 창작성이나 아이디어로서의 참신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

어문저작물의 경우 문장이 비교적 짧고 표현방식에 창작, 공리를 할 여지가 없는 경우나 아이디어와 일체로 된 표현이나 표현형식이 제약되어 있는 표현 및 단순히 사실을 소개한 것으로 다른 표현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구체적인 표현이 평범하고 매우 흔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개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저작자의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용어의 선택, 전체 구성의 공리, 특징적인 표현이 들어 있는가 하는 그 작품의 표현형식과 그 작품이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 목적 및 그에 따르는 표현상의 제약 유무와 정도, 그 표현 방법이 같은 내용과 목적을 기술하기 위해 일반적,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함이 상당하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

일반적으로 트윗글은 140자 이내라는 제한이 있고 신변잡기적인 일상적 표현도 많으며, 문제된 이 사건 트윗글 중에도 문구가 짧고 의미가 단순한 것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트윗글조차도 짧은 글귀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각 글귀마다 특유의 함축적이면서도 역설적인 문체가 사용되어 그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73 판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므로, 어문 저작물인 서적 중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서적의 제호나 저작자또는 출판사의 상호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7

순수 창작물 공모전

Q

웹툰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친한 친구가 자신이 썼던 소설내용을 토대로 웹툰을 만들어 공모전에 응모해 보라고 합니다. 공모전 요강에 「응모작품은 응모자의 ‘순수창작물’이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친구 말처럼 응모해도 될까요?

A

공모전 요강 상 응모작품이 응모자의 ‘순수창작물’일 것을 요하는 경우, 공모전 요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 주최자가 공모전 요강에 응모자의 ‘순수창작물’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수창작물’이라는 단어는 법률적인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창작물’의 해석이 문제되었던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사건 제안지침서에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뿐만 아니라 ‘순수’ 창작물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창작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980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 공모전 요강에 기재된 내용과 문맥에 따라 ‘순수창작물’의 정의가 각기 달라질 수 있는바 ‘순수창작물’ 해당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 사안과 같이 친구가 창작한 소설을 기초로 질의자가 웹툰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친구의 소설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기초로 이를 변형하여 새로운 저작물이 창작된 경우에 그 새로운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라고 2차적저작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판례에 따르면 ‘2차적저작물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가 미치는 부분은 원저작물에는 없던 새로이 부가된 창작성이 존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즉 보호범위는 2차적저작물에 있어서는 2차적저작자에 의하여 창작적

으로 추가 또는 변경된 부분만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²⁶⁾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가 친구의 소설을 기반으로 웹툰을 작성하였다면, 친구의 소설과 귀하의 웹툰은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웹툰이 귀하의 ‘순수창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귀하가 친구의 소설을 기반으로 웹툰을 창작하여 응모할 경우, 공모전 요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주최자에 문의하여 더욱 명확히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9804 판결

갑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문화 시범거리 BI(Brand Identity) 및 조성물 제작·설치사업 실시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제안지침서에 '제안업체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함. 을 주식회사가 입찰에 참가하여 BI 및 조성물 제작·설치계약을 체결하였음. 을 주식회사가 작성한 BI의 도안부분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허용된 외국 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사안임. 이에 BI는 제안지침서상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창작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6) 오승종, 「저작권법 강의」, 제3판, 박영사, 2020년, 124면

[2] 공모전과 저작권 귀속

8

응모작의 저작권 귀속



공모전 요강에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와 동시에 주최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주최자가 저작자가 되는 것인가요?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한다는 창작자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참조),²⁷⁾저작자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1항 참조).²⁸⁾따라서 원칙적으로 응모작(수상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수상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모전 주최자가 ‘응모작(수상작)의 저작권은 주최자에게 귀속된다’고 공모전 요강에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주최자는 창작자 원칙에 따라 저작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요강 내용은 ‘창작물 공모전 지침’에 위반되며, 응모자와 주최자 사이 법적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최자 입장에서는 이를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응모 작품(또는 수상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주최기관에 귀속된다고 규정한 공모전 요강은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2014. 8. 7.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공모전 주최 사업자가 응모 작품의 저작재산권을 대가 지급 없이 양수한다는 내용으로 응모자에게 부담하고, 수상 작품에 지급되는 상금·상품 등의 혜택도 원칙적으로 수상 작품의 권리에 대한 대가를 미리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상 혜택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공모전에 관한 다수 고객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포상금’ 또는 ‘격려금’ 성격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최자에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내용의 공모전 요강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모전 주최자는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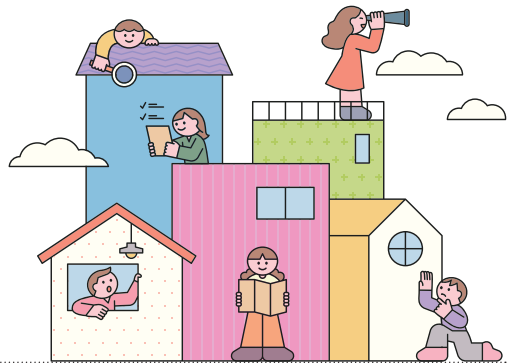
27) 저작권법 제2조(정의)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28)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참고 자료

공모전 요강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관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법 제2조 제1호).공정거래위원회는 공모전 응모작(또는 수상작)의 권리를 주최자에게 귀속하는 공모전 약관을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판단²⁹⁾ 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제한하는계약 체결과 관련하여서도 문체부 지침과 관행에도 배치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³⁰⁾한 바 있습니다.



29)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모전 응모 작품의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 2014. 8. 8.

30)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져간 A 제재”, 2023. 9. 22.

9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

Q

지역문화센터 담당자입니다. 금번에 ‘창작물 공모전 지침’에 따라 극본 공모전을 진행하고 공연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공모전 요강에 ‘공모전 주최자와 수상자가 수상작의 저작권을 공동소유 합니다’라고 기재해도 될까요?

A

공모전 요강에 ‘공모전 주최자와 수상자가 수상작의 저작권을 공동소유 합니다’라고 기재하는 것은 ‘창작물 공모전 지침’에 위반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 하며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진다는 ‘창작자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호 및 제10조 제1항 참조.³¹⁾ ‘창작물 공모전 지침’에서도 응모작(수상작)의 저작권 귀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저작권 귀속

-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저작권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저작권법 제10조).

2. 이용허락

- 공모전 주최자가 수상작 발표 후 수상작의 저작권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대가 지급을 전제로 별도의 합의를 통해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해당 저작권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

31)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권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한편 본 사례에서는 공모전 요강 상 수상작의 저작권권을 주최자와 수상자가 공동소유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모전 주최자가 수상자와 별도의 양도에 관한 합의 과정을 생략하고 수상자의 저작권권 일부를 양도받게 되는바 ‘창작물 공모전 지침’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공모전 주최자가 수상자의 저작권권을 공동소유하고자 한다면, 수상 후 별도의 합의를 통해 양도받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질문 14번 참조).

10 미수상작의 저작권과 사용권



공모전에 응모했지만 수상하지 못한 미수상작의 경우 저작권과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창작물 공모전 지침’에 따르면, 공모전 주최자는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미수상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해당 창작물의 창작자인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공모전 주최자는 별도의 반환 요청이 없는 한, 입상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11

공동저작물과 저작권 귀속

Q

공모전에 팀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른데 팀원중에 누가 저작자가 되나요?

A

창작적 표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모두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저작자는 1인일 수도 있지만, 다수가 모여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처럼 공동 창작의 의사를 가진 2인 이상이 저작물을 창작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 저작물’이라 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참조)³²⁾, 이러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를 ‘공동저작자’라 합니다. 그러나 창작에 기여한 모두가 공동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기 부여, 자료 제공, 오류 수정 및 창작에 필요한 부수적인 도움을 준 것을 넘어 해당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사람만이 공동저작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가 개별적으로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되는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행사(이용허락, 양도, 질권 설정 등)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참조)³³⁾, 만약 공동저작자가 저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경우 이는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32) 저작권법 제2조(정의) 21.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3)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판결 참조). 그러나 공동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저작권 행사에 대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참조).³⁴⁾ 위와 같이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의 행사는 전원의 합의를 요구하는 반면,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9조).³⁵⁾



34) 저작권법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 할 수 없다.

35) 저작권법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 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 공모전 수상작의 활용

12 주최자와 수상자가 별도의 합의를 해야 하는 이유

Q

주최자가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재산을 양도받고자 할 경우, 공모전 요강 외에 입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재산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재산이 무엇인지, 양도 기간은 어떠한지, 저작권재산에 대한 양도의 대가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저작권재산 양도 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절차를 통해 응모자(저작자)와 공모전 주최자(이용자) 사이의 권리 관계를 균형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양자의 이익을 조율하는 기회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수상작에 대해 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모전 요강에 따른 저작권 양도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 공모전 상금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은 ‘13. 공모전 상금’의 의미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3 공모전 상금의 의미

Q

공모전을 주최하여 수상작을 발표하였고, 그에 대한 상금을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수상작 이용(또는 저작권재산권 양도)에 따른 대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A

공모전 주최자로 하여금 공모전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이용허락의 조건을 결정하여 요강에 명시해야 하며, 이용허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허락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일정한 조건 하(수상작의 이용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것이 개최 목적이나 일반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에 상금·상품 등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상 혜택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공모전에 관한 다수 고객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포상금’ 또는 ‘격려금’ 성격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수상 작품의 권리에 대한 대가를 미리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³⁶⁾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금과 별도로 저작권 이용(또는 저작권재산권 양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수상작의 이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것이 공모전 개최 목적이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적절(예: 공모전 홍보, 수상작 전시 등)하다면 불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³⁷⁾

36)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모전 응모 작품의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 2014. 8. 8.

3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공모전 응모 작품의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 2014. 8. 8.

[4]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

14 저작권 양도계약서

Q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입니다. 공모전 수상 후 수상자와 별도로 저작권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저작권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예시가 있을까요?

A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부록4].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창작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누리집에 게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저작권 표준계약서(4종)로 저작권재산권 이용허락(독점적, 비독점적) 계약서와 저작권재산권 양도(일부, 전부) 계약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공모전 주최자가 수상자와 수상 후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저작권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신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³⁸⁾

38) https://www.mcst.go.kr/kor/s_data/generalData/dataView.jsp?pSeq=41&pMenuCD=0405050000&pCurrentPage=1&pType=&pSearchType=01&pSearchWord=

15

2차적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허락 계약

Q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은 향후 2차 가공 등을 거쳐 활용될 수 있다”고 기재하였는데,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 또 다시 별도의 합의를 진행해야 할까요?

A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공모전 주최자는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해당 수상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응모자는 공모전에 응모함으로써 추후 입상할 경우 주최자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모전 주최자는 공모전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이용허락의 조건(독점 또는 비독점 이용·이용방법·기간·횟수·장소·이용매체·이용허락의 대가 등)을 결정하여 공모전 요강에 명시해야 하고, 이용허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대가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상금·상품 등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전 요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용 범위는 공모전의 주최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것이어야 합니다. 2차저작물작성의 경우는 공모전의 주최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의 활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모전 주최자가 공모전 요강에서 공고한 이용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수상작을 이용하거나 특히,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전 요강에 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법에 따라 입상자와 별도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16 미성년 수상자와의 계약시 유의사항

Q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포스터 공모전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추후 수상자인 초등학생과 저작권권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A

미성년자와 저작권권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되며,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입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저작권권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이고, 친권자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를 의미합니다. 친권자가 없는 때에는 2차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이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지만, 그 효과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공모전 주최자가 미성년자인 초등학생과 저작권권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추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와의 저작권권 계약체결을 예정하신다면, 반드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함께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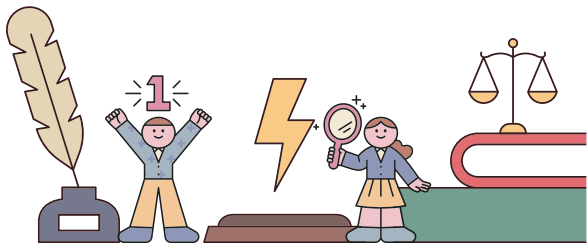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Q

공공기관 공모전 담당자입니다.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는 내용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공모전을 개최하여도 불공정 소지가 존재할까요?

A

공모전 요강에 공모전 주최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귀속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개최할 경우 불공정한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존재합니다.³⁹⁾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하며(저작권법 제5조)⁴⁰⁾,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와 작성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인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지게 됩니다(저작권법 제22조).⁴¹⁾ 한편, 저작자는 원저작물이 미래에 어떠한 부가가치를 가질 것인지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함에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저작자는 향후 어떤 2차적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창작물 공모전 지침’에 의하면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 발표 후 입상작의 저작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통해 해당 저작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전 주최자가 공모전 요강에서 공고한 이용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입상작을 이용하거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입상자와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본 사안에서

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40)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1)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일부인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기 위하여는, 입상작 발표 후 입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 민법

공정위는 2023년 B회사가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공모전 요강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A에게 귀속되는 조건 (“수상작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A에 있다”)을 설정하고,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B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현저하게 제한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이는 저작권 법령의 취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및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배치되는 행위이다.”라고 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들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⁴²⁾

4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져간 B 제재”, 2023. 9. 22.

18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이용허락 기간 내에 게재한 수상작은 이용허락 기간이 지나도 별도로 회수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게재해도 될까요?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⁴³⁾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배포 중인 ‘창작물 공모전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공모전 주최자는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해당 입상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공모전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이용허락의 조건(독점 또는 비독점적 이용·이용방법·기간·횟수·장소·이용매체·이용허락의 대가등)을 결정하여 공모전 요강에 명시해야 하고, 이용허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모전 주최자는 입상작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의 이용 기간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용방법과 조건 등을 설정하여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에 대한 장기간 이용이 필요한 경우(ex CI, BI), 공모전 취지를 고려하여 별도의 합의를 통해서 저작재산권 양도를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⁴⁴⁾ 본 사안과 같이 공모전 주최자가 이용허락 기간 중 입상작을 게재한 게시물에 대하여, 이용허락 기간 도과 후에도 기존 게시물을 회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활용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검토한 저작권법 및 ‘창작물 공모전 지침’에 따르면, 공모전 주최자는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해당 입상작에 대한 이용 기한을 정하여 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용허락 기간 후에도 기존 게시물을 회수하지 않는 것은 수상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43)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44)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 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공모전 주최자는 수상작 발표 후 수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저작권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공모전 주최자는 입상작 이용허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용허락 기간동안 게재하였던 입상작의 회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나, 신규 게시는 할 수 없다’는 취지가 포함된 저작권재산권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9 정당한 이용 대가 산정의 기준

Q

수상작 발표 후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대한 대가에 대해 협상 중입니다.
수상작의 저작물 이용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A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대한 대가 또는 저작권재산권의 양도 대가를 결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재산권의 이용 대가를 정해놓은 법률적 기준은 없으며, 당사자의 합의에 맡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도 작가, 출판사 등의 사정에 따라 계약마다 그 비율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저작물의 유형, 이용 형태, 당사자의 지위, 저작물 시장의 관행, 사회 일반의 상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⁴⁵⁾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한국 문학예술저작권협회 등 신��관리단체들의 사용료 징수규정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고 있습니다.⁴⁶⁾ 신��관리단체들의 사용료 징수규정 등 주요 규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한국저작권위원회)자료>신��관리단체 주요규정 또는 각 신��관리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사용료 협의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5) 최진원,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60면.

46) 저작권법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⑨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신��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5]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공모전에 응모하기

20 생성형 AI를 이용한 산출물

Q

최근에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AI 산출물인 미술품들을 공모전에 제출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제가 직접 그림 그리지 않았지만 미술공모전에 제출해도 될까요?

A

공모전 요강에 기재된 생성형 AI에 대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본 사안에서 응모자가 제출하려는 미술작품들은 스스로 직접 창작한 것이 아닌,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AI산출물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AI모델 구축을 위한 학습과정에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이러한 학습 데이터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어문, 음악, 미술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모델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기존 저작물이 상당수 포함되는바, 그와 동일·유사한 AI산출물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위험성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23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생성형 AI저작권 안내서」에서는 AI산출물을 공모전에 제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점들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학술지 및 공모전의 생성형 AI 관련 정책·가이드라인 확인

학술지 및 공모전에 논문이나 작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성형 AI에 관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제출 시에는 게재 또는 수상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며, AI활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 표기하지 않고 제출한 것에 대해 허위 제출로 간주되어 법적인 문제 발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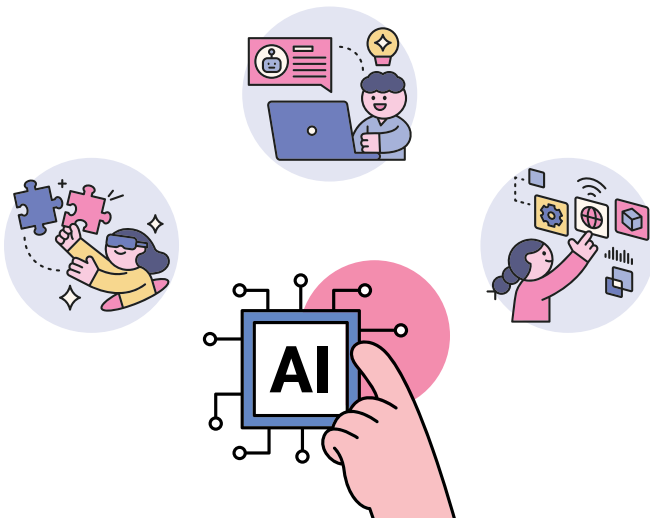


관련사례

- ▷ N학술지의 경우, LLM를 연구 논문의 크레딧 저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LLM를 이용시 그 내용을 연구방법 등의 항목에 기술해야 한다는 점과 생성형 AI 이미지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함.
- ▷ 2023년 9월 국내 K사에서는 AI로 만든 메신저 이모티콘의 입점을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AI기술 수용 여부 등에 관해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생성형 AI저작권 안내서」 34면 내지 35면 참조

따라서 응모자는 공모전 요강에 기재된 생성형 AI 정책 ·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수상 취소 및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1

라인의 저작물을 활용한 창작물



홍보 영상공모전에 제출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짧은 영상을 삽입하여 제출해도 될까요?



해당 영상의 저작권자로부터 영상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와 별도로 주최 측의 공모전 요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46조에서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 방법과 조건을 정하여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⁴⁷⁾ 따라서 응모자가 제작한 홍보 영상에 제3자의 영상(이하 '영상'이라 합니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의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이용 허락을 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이더라도, 공모전 요강 상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들도 존재하는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모전 요강에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가 응모자에게 귀속될 것을 요한다'라고 적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상은 별도의 저작권자가 존재하는바, 응모자에게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모전 요강에 '응모자의 순수창작물일 것을 요한다'라고 적시되는 경우에도 영상은 응모자가 아닌 제3자의 창작물에 해당되는바 공모전 요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귀하가 영상 저작권자에게서 이용허락을 받은 활용 범위를 넘어서 주최자가 해당 영상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응모작에 제3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을 활용할 경우, 설사 저작권자에게서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공모전 요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바 사전에 공모전 주최자와 별도로 협의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7)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 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22

공유·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창작물



응모작의 일부에 공유저작물, 공공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먼저 공유저작물이란, 사회구성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만료 저작물, 기증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저작물, 공공저작물 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저작물은 저작권 권리처리가 된 저작물이므로 사전에 제시된 이용허락 조건을 준수하면 이용허락 조건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유마당 : www.gongu.copyright.or.kr)

다음으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상 공공저작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의미하고, 공공저작물은 사전에 부착된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조건을 준수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유저작물,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모전 요강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별 공모전 요강에서 ‘참가자는 작품에 대한 모든 배타적인 법적 권리를 보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유저작물, 공공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응모 요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공모전에서 수상할 경우 통상 상금, 상품 등을 수령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상업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유형의 공유저작물, 공공저작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등의 저작물의 변형을 금지하고 있는 유형의 공유저작물, 공공저작물을 사용할 경우에도 해당 조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23

디자인 플랫폼 콘텐츠를 활용한 창작물



웹툰 작가입니다. 최근 진행 중인 웹툰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려고 하는데 이미지나 디자인 플랫폼의 무료 콘텐츠들을 활용해도 될까요?



저작권법 및 이용약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개별 플랫폼 이용약관에서 자사 콘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콘텐츠를 활용한 작품을, 공모전에 제출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별도의 조건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 A사 플랫폼 이용약관

A사에서 제공되는 디자인 요소를 포함하여 만들어진 작업결과물을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해서는 유료회원으로 A사의 템플릿과 동일성이나 유사성이 없는 창작물만 가능합니다. 단, 공모전 요강에서 저작권 귀속이나 양도조건이 없어야 하며, A사내에서만 재편집하여야 합니다.

• B사 플랫폼 이용약관

제9조 (콘텐츠의 금지된 사용)

"편집기"를 통해 만든 "사용자 디자인"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저작권 귀속이 요구되는 공모전, 전시회 또는 대회 등에 출품 또는 납품하는 행위

• C사 플랫폼 이용약관

회원은 C사에서 제공되는 디자인요소가 포함된 작업결과물을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표권이나, 저작권 등록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응모작에 이미지나 디자인 플랫폼의 무료 콘텐츠를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추후 응모작을 양도·등록하시는 등의 경우에 저작권법 또는 개별 플랫폼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⁴⁸⁾ 따라서 이미지나 디자인 플랫폼의 무료 콘텐츠를 이용하심에 있어서는 공모전 요강과 플랫폼 사의 이용약관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기타 공모전 요강의 해석

24 다른 공모전 중복 응모 문제



24-1

공모전에서 입상한 경우 해당 수상작을 다른 공모전에도 응모할 수 있나요?



행정기관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중복응모를 제한하고 있는 공모전에서 자신이 다른 공모전에 제출하여 수상한 공모안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공모안을 제출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최자는 기관 자체 검증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또는 심사위원회,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모방, 타 대회 입상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공모전 요강에서 '타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은 응모할 수 없다'고 명시하거나 '타 공모전 수상경력 없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응모자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전 주최자가 사전에 마련하여 공시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48)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Q

24-2

수상작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응모작을 다른 공모전에 제출할 수 있나요?

A

공모전의 응모작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공모전 주최자는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별 공모전 요강에서 입상 여부와 관계없이 타 공모전에 출품되지 않았던 작품들만을 응모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응모작을 다른 공모전에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공모전에 동일한 창작물을 응모하기 위해서는 상세 공모전 요강을 확인하거나 주최자에게 문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5 응모자의 저작물 이용 관련 질문

Q

공모전 응모자가 응모작을 SNS에 공유해도 되나요? SNS에 공유해도 된다면, 공유 시점은 언제라도 상관없나요?

A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응모자에게 귀속되지만 공모전의 취지, 성격, 주최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공모전 요강이 존재하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모전 요강에서 '응모일 기준 국내외에서 공표되지 않은 작품'을 응모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응모작을 SNS에 공유하는 행위가 공표가 되어 응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공유 시점과 관련하여 만약 응모자가 입상한 후에 주최자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최자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응모자(수상자)도 SNS에 공유하려면 비영리 목적의 이용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SNS에 공유하시기 전에 공모전 요강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사전에 주최자에게 문의하시거나 별도의 허락을 받으신 후에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P A R T





부록



창 작 물 공 모 전 지 침 바 로 알 기



1 저작권 법률지원센터 안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요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입니다.

▶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창작인의 저작권 행사와 권리보호를 지원하고, 각 장르별로 분산된 저작권 관련 법률 상담 지원 기능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기능 및 역할



▶ 저작권 계약 상담 등 저작권 공정거래 컨설팅, 법제도 해석·적용·판례 등에 대한 자문 및 교육

▶ 저작권 계약, 공정거래 관련 현안 및 이슈에 대한 사례집,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가이드 등 제공

▶ 창작자 보호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 찾아가는 「저작권법률서비스지원단」 구성·운영

▶ 창작물 공모전 지침 마련 및 준수 여부 모니터링



창작물
공모전 지침



저작권 계약
상담 사례집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위 자료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방법



전화 컨설팅(1800-5455)

- ▶ 저작권 법률 및 제도, 저작권 계약 등 관련사안에 대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 상담시간은 월-금 09:00-17:00
점심시간은 12:00-13:00입니다.



방문 컨설팅(예약 필수)

- ▶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을 통해 상담 예약 후 방문하시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변호사 및 저작권 법률서비스지원단 변호사가 직접 대면하여 상담해드립니다.

* 상담시간은 월-금 10:00-16:00
점심시간은 12:00-13:00입니다.



온라인 컨설팅

- ▶ 전화·방문이 어려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의 게시판을 통해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컨설팅

- ▶ 출장상담은 기관·단체 등에서 요청 시 저작권법률지원센터와 협의 후 가능합니다.



다음 사항 등에 관해서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저작권법에 대한 유권해석
- ▶ 변호사 및 외부인력 알선 및 섭외
- ▶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상담
- ▶ 저작권 분야 이외의 기타 법률상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오시는 길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대표
전화

1800-5455

운영
시간

전화상담 | 평일 09:00 - 17:00
내방상담 | 평일 10:00 - 16:00
* 휴무일 |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주차권 제공이 어려우므로 내방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저작권 조정제도 안내

저작권 및 관련 분쟁 발생 시 법조계, 학계 그리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조정위원들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 하는 제도

특징

신속성	소송에 비해 신청 및 진행 절차가 신속 간편하므로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 내로 처리(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문성	각 조정부는 법조계, 학계, 산업을 대표하는 저작권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적인 조력 지원 가능(조정부 3인으로 구성, 1인은 변호사 자격 필요)
경제성	각 조정부는 법조계, 학계, 산업을 대표하는 저작권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적인 조력 지원 가능(조정부 3인으로 구성, 1인은 변호사 자격 필요)
비공개성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영업상 또는 개인적 비밀이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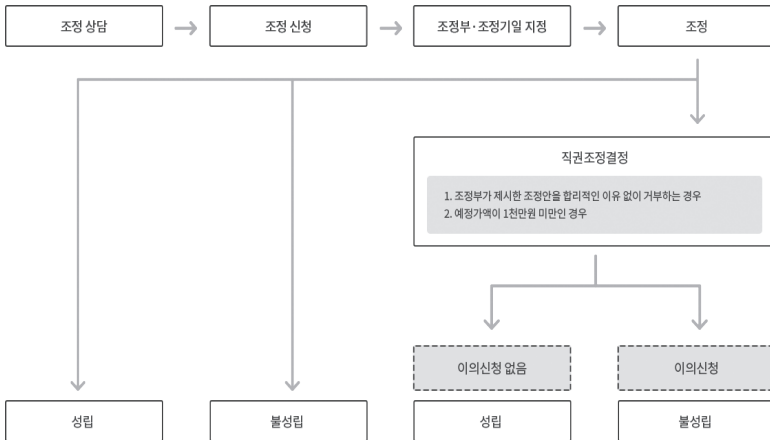
◆ 조정절차

- 저작권 관련 분쟁 당사자의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이 담당 조정부를 지정하고 담당 조정부는 조정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출석요구서 발송
- 조정부장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출석 및 증명 서류의 보완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서증·검증·감정 등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담당조정부는 조정처리기한인 3개월 안에 1차 또는 수차례의 조정기일을 진행을 통해 조정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 분쟁에 개입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조정안을 제시
- 조정은 조정 당사자간의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성립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별도의 재판 절차없이 강제집행이 가능

2 저작권 조정제도 안내

조정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내방 또는 우편)
- 온라인 신청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 사업 ▶ 조정·알선 ▶ 분쟁조정 바로가기)
- 조정 관련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
(☎02-2669-0043,0044)



Q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법적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성립된 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17조 제5항).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정조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조정조서에 대한 강제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 1992년 3월 2일 “각종 분쟁조정 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I 목적

본 지침은 ‘창작물 공모전’(이하 “공모전”이라 한다)에서 응모자(저작자)와 공모전 주최자(이용자) 사이의 공정한 저작권재산권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II 적용범위

본 지침은 공모전에 출품되는 응모작에 적용되며, 공모전 주최자는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보다 응모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 저작물의 정의(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

• 저작물의 예시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 영상저작물
- 지도·도표·설계도·악도·도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저작권의 발생(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예를 들어, 납본이나 기탁 또는 등록 등)을 요구하지 아니함

III

근거

-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지식재산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지식재산 기본법 제2조 제2호).
- ② 정부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지식재산 기본법 제19조).
- ③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 제1조).
- ④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⑤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공모전 요강은 공모전 주최자(사업자)가 여러 명의 저작자(상대방)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 “약관”에 해당할 수 있음.

IV

공모전에서의 권리관계

1. 저작권 귀속

- ❶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저작권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저작권법 제10조).

※ 응모작의 저작권 일체를 주최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일반적으로 고지한 공모전 요강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할 수 있음

• 예시

-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저작권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응모자(창작자)에게 있다.
-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저작권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응모작 수상 후에도 입상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 잘못된 예

- 출품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주최자에게 귀속된다.
-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주최자에게 있다.

- ❷ 공모전 주최자는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 공모전 주최자는 별도의 반환 요청이 없는 한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

• 잘못된 예

- 수상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출품작의 저작권재산권은 주최자에게 귀속된다.
- 출품작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주최자가 가진다.

3

창작물 공모전 지침

- ③ 공모전 주최자는 응모작을 접수할 때 응모작 반환 여부에 대한 응모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응모자가 저작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모자에게 반환하되, 반환과 관련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가 부담할 수 있다.

• 예시

- 응모자가 응모작을 접수할 때 응모작 반환을 요구한 경우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응모자에게 반환하되, 반환과 관련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의 부담으로 한다.
- 응모자가 응모작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주최자는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한다.

2. 이용허락

- ① 공모전 주최자는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해당 입상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응모자는 공모전에 응모함으로써 추후 입상할 경우 주최자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모전 주최자는 공모전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이용허락의 조건(독점 또는 비독점 이용·이용 방법·기간·횟수·장소·이용매체·이용허락의 대가 등)을 결정하여 공모전 요강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허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대가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상금·상품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 예시

- 주최자는 입상작을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발표일로부터 ()년간 복제·전송·배포할 수 있다.
- 주최자는 입상작을 사전에 고지한 목적 범위 내에서 주최자가 관리하는 누리집, SNS 채널(구체적으로 특정)에 게재할 수 있다.

3

창작물 공모전 지침

- 미술저작물·사진저작물

- 주최자는 입상작을 ()년간 (복제/전시/공중송신)할 수 있다.
- 주최자는 입상작(CI/BI/캐릭터)을 홍보 목적에 한하여 ()년간 독점적으로 (복제/배포/전시/공중송신)할 수 있다.

※ CI, BI 공모전과 같이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에 대한 독점적, 장기간 이용이 필요한 경우 공모전 취지를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거나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저작권산권 양도를 받는 것을 권장함.

- 건축저작물

- 주최자는 입상작의 설계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건축물을 제작할 수 있다.

- 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

- 주최자는 입상작을 ()년간 복제·전송할 수 있다.

- ② 공모전 주최자가 공모전 요강에서 공고한 이용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입상작을 이용하거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입상자와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

• 예시

- 주최자는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입상작을 복제 및 전송할 수 있고, 입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한 이용허락을 얻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 주최자는 입상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 주최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입상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입상작을 이용한 수익 창출행위를 할 수 있다.
- 주최자는 공모전 요강에 공고된 범위를 넘어 입상작을 이용할 경우 저작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3

창작물 공모전 지침

• 잘못된 예

- 주최자는 입상작을 필요에 따라 2차적저작물로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입상작은 향후 2차 가공 등을 거쳐 활용될 수 있다.

※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예시

-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웹툰, 드라마, 영화 제작

- ③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 발표 후 입상작의 저작권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대가 지급을 전제로 별도의 합의를 통해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해당 저작권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

• 예시

- 주최자는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을 정당한 대가 지급을 전제로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다. 이때, 양도 여부, 범위 및 그 대가에 대해서는 추후 입상자(저작자)와 별도 합의를 통해 정한다.
- 주최자는 입상작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대가 지급을 전제로 저작권재산권을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다. 이때, 양도 여부, 범위 및 그 대가에 대해서는 추후 입상자(저작자)와 별도 합의를 통해 정한다.

3. 정당한 대가

- ①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을 이용하는 경우, 입상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대가는 거래 관행 및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공모전 주최자가 공모전에 투자한 비용과 입상자가 공모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점들을 참고할 수 있다.
- ② 공모전 요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적 범위 내에서의 입상작 이용의 경우 정당한 대가는 시상금 또는 상품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모전 요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용 범위는 공모전의 주최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 예시

-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입상 시 공모전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입상작)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입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시상금(또는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

- ※ 공모전 주최자는 이용허락 및 저작재산권 양도에 대한 정당한 대가(시상금 또는 상품 등)를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관행 및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그 보상이 이용허락 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는 이용허락 및 저작재산권 양도가 무효화될 수 있음.
- ※ 공모전 입상 혜택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공모전에 관한 다수 고객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포상금’ 또는 ‘격려금’의 성격으로, 원칙적으로 입상 작품의 권리에 대한 대가를 미리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입상작의 사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사용 범위가 공모전 개최 목적이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적절하다면 불공정하지 않음(2014. 8. 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4. 저작인격권의 존중

- ❶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을 이용할 때에는 입상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공모전 주최자는 원칙적으로 저작자인 입상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입상작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다.

※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고, 그중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 있다.

※ 저작인격권은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모전 입상작의 이용과 관련하여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과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이 문제될 수 있다.

- ❷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상작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성명표시의 예외, 동법 제13조 제2항에서의 변경에 대한 권리)에는 예외적으로 저작인격권이 제한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입상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작물 공모전 지침

-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 주최자가 저작물을 창작적으로 변형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



V

분쟁 해결

- ① 공모전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문언의 내용·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 ② 응모자나 공모전 주최자는 공모전에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 예시

- 공모전에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응모자 및 주최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공모전 주최자는 응모자가 공모전의 저작권에 관한 이의 제기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의신청 절차 및 창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 예시

- 입상작의 저작권에 관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000의 담당부서 000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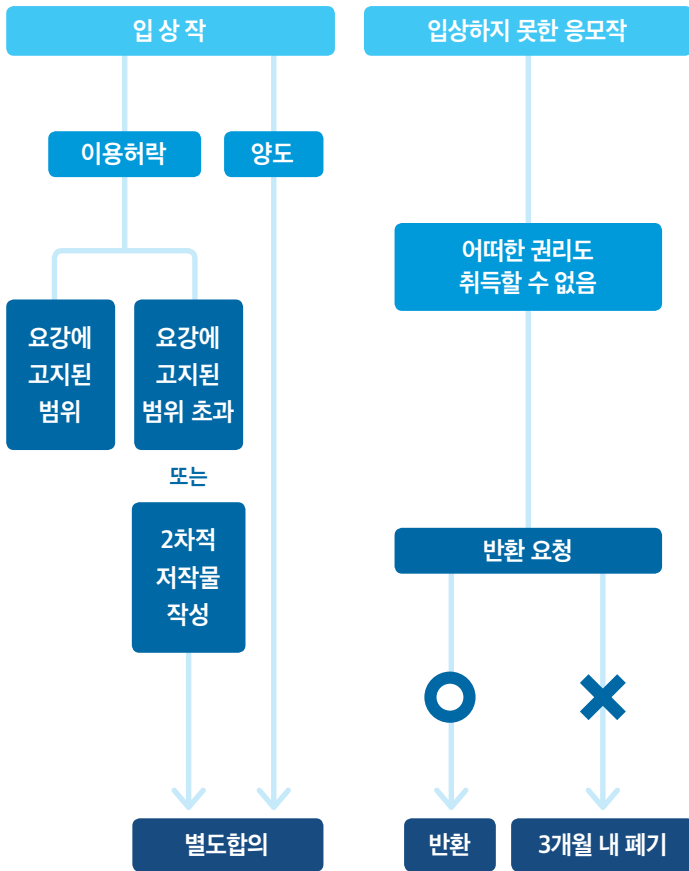
- ④ 공모전 주최자는 공모전의 응모자가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공모전 요강에 주의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 예시

-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공모전 요강 작성 전 확인 사항

공모전 응모작



공모전 요강 예시

■기간 : 0000.00.00.~0000.00.00.

■응시대상 : 000 000 000

■주최/주관 : 00000/00000

■유의사항/기타

-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저작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수상 후에도 입상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 주최자는 입상작(최우수작/우수작/입선작)에 한하여 (영리/비영리 목적으로) ____년 동안 (독점적으로/비독점적으로) ____, ____할 수 있다.

(*예: 주최자는 최우수작·우수작을 ()년 동안 독점적으로 복제·전시할 수 있다, 입상작은 홍보를 위해 ()년간 SNS 게시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사용될 수 있다.)

-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입상 시 공모전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입상작)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입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시상금(또는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

- 향후, 주최자는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전부 또는 일부)을 양수할 필요가 있거나, 공모전 요강에 공고된 범위를 넘어 입상작을 이용할 경우, 저작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예: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만으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입상작을 변형하는 등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공모전 요강 예시

- 응모자는 공모전의 저작권과 관련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____ 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예: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000의 담당부서 000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향후 공모전 출품작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주최자는 응모작 유출방지 등 주의의무를 다한다.
- 주최자는 입상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주최자는 원칙적으로 저작자인 입상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입상작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주최자는 응모작을 접수할 때 응모작 반환 여부에 대한 응모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저작자에게 반환하되, 반환과 관련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저작자가 부담할 수 있다.



저작권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자 또는 저작권재산권 이용허락자 _____(이하 “권리자” 이라 함)와
 저작권재산권 이용자 _____(이하 “이용자” 이라 함)는 아래 저작물
 _____에 관한 저작권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권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권리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¹⁾작성권

제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허락자에게 제5조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

1)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4

저작권 표준계약서(저작권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이용허락기간의 시작점인 ____년 ____월 ____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사용료를 지급한 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 (권리자의 의무)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 관하여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른 저작권재산권을 이용할 권리를 제3조의 기간 동안 비독점적으로 허락한다.

(2)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대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상당한 자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요청하면 이용허락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에 제3자의 이용허락권,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4)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을 제3조의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2조의 이용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료는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_____원
		□ 분할	
	□ 정률	□ 정기지급	(예:월) _____원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
	□ 기타		

4

저작권 표준계약서(저작권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년 _____월 _____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3)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허용하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권적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 이용허락권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이용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
2. 대상저작물을 제3자의 명예권을 비롯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

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지)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년 ____월 ____일

권리자 :

성 명(인)

생년월일

주 소

이용자 :

성 명(인)

생년월일

주 소

저작권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자 또는 저작권재산권 이용허락자 _____(이하 “권리자” 이라 함)와
저작권재산권 이용자_____ (이하 “이용자” 라 함)는 아래 저작물
_____에 관한 저작권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권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권리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¹⁾작성권

제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권리자에게 제5조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허락기간의 시작점인 ____년 ____월 ____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이용료를 지급한 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1)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4

저작권 표준계약서(저작권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제4조 (권리자의 의무)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제2조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2)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대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상당한 자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요청하면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료는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_____원
		☐ 분할	
	☐ 정률	☐ 정기지급	(예: 월) _____원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
	☐ 기타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년 ____월 ____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이용료 _____원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일시금으로 혹은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허용하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이용허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은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이 양도되거나, 이용허락되었거나, 질권이 설정되는 등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어떠한 부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4. 본 계약에 따른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3자에게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용허락, 질권의 설정 등 이용자의 독점적 이용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는 것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 이용허락권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이용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
2. 대상저작물을 제3자의 명예권을 비롯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지)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的事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양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저작권 표준계약서(저작권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년 ____월 ____일

권리자 :

성 명(인)

생년월일

주 소

이용자 :

성 명(인)

생년월일

주 소

4

저작권 표준계약서 (저작권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저작권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재산권 양도인 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재산권 양수인 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에 관한 저작권재산권(이하 “저작권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권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권리 :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¹⁾작성권

제3조 (저작권재산권 양도범위)

본 계약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의 저작권재산권으로 본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년 ____월

1)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4

저작권 표준계약서(저작권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___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2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년 ___월 ___일까지 저작권재산권 이전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 중 제3자에게 양도된 권리, 이용허락된 권리, 제3자의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_____원
		□ 분할	
	□ 정률	□ 정기지급	(예: 월) _____원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
	□ 기타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에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4

저작권 표준계약서(저작권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년 _____월 _____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양수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양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4

저작권 표준계약서(저작권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양도인 :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양수인 :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저작권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저작자 또는 저작권재산권 양도인 _____(이하 “양도인” 이라 함)과 저작권재산권 양수인 _____(이하 “양수인” 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에 관한 저작권재산권(이하 “저작권재산권” 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권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권리 : 저작권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제3조 (저작권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권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권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²⁾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2)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다만 컴퓨터

4

저작권 표준계약서(저작권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것으로 본다. 다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제14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년 ____월 ____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_____원
		□ 분할	
	□ 정률	□ 정기지급	(예:월) _____원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
	□ 기타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

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2항 단서에 의하여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4

저작권 표준계약서(저작권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년 _____월 _____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계약의 유무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 의사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양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4

저작권 표준계약서(저작권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년 ____월 ____일

양도인 :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양수인 :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8. 10.] [대통령령 제32628호, 2022. 5. 9., 제정]

행정안전부(혁신기획과) 044-205-2211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전”이란 행정기관이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考案), 창작물 등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상금·상품 등을 수여하는 경진 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모 대회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3. “응모”란 국민이 공모전에 참여하여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4. “부정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한다.
 - 가.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
 - 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
 - 다. 연구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하여 응모작의 내용을 왜곡하는 변조 행위
 - 라.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중복응모를 제한하는 공모전에 제출하는 부당한 중복응모 행위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공모전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공모전에 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공모전을 시행하는 행정기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전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적 목적의 공모전
3. 상장을 수여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상금 또는 상품만을 수여하는 공모전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모전이 다른 공모전과 유사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공모전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전의 분야·목적 및 내용
2. 응모 자격 및 방법
3. 수상작의 결정 방법 및 수상 인원
4. 상장·상금·상품 등 시상 내용
5. 수상작에 대한 심사 기준 및 방법
6.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판단기준과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개 검증 여부 등 부정 행위 검증의 방법
7. 제10조에 따른 수상작의 공개에 관한 사항
8.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9. 수상작 결정 취소 및 상장·상금·상품 등의 반환 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방법
10.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모전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전의 공고)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5일 이상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응모)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할 경우 방문, 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응모 방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응모자에게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안내하고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모전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전별로 공모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의 분야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분야별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응모작의 심사 및 수상후보작의 선정
2. 부정행위의 검증 및 판단
3. 수상작의 결정
4. 수상후보작 및 수상작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5. 그 밖에 공모전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분야별로 설치한 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해당 공모전의 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⑥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가기관·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심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응모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검증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한정하여 부정행위를 검증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후보작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 외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심사 등 국민참여 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10일 이상 공개하고 부정행위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마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모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응모작이 응모 자격, 심사 기준 등 공고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상작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수상작의 공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

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수상작의 제목과 내용
 2. 수상자 및 상장·상금·상품 등의 시상 내용
 3. 수상작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의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공개하지 않거나, 수상자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후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작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여한 상장·상금·상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당 응모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응모자는 결정 취소나 반환 청구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12조(공모전 운영의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모전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모전 운영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모전 운영을 총괄·지원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공모전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32628호, 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공모전부터 적용한다.

[부록6]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모전의 금액기준에 관한 고시(고시2022-58호)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모전의 금액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8. 10.]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58호, 2022. 8. 5., 제정.]

행정안전부(혁신기획과), 044-205-2211

1. 근 거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2. 금액 기준

개별 수상작에 대해 예정된 최고 시상 금액(상금과 상품 가액의 합계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3. 제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58호, 2022. 8. 5.>

이 고시는 202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바로 알기

발 행 | 2025년 3월 발행

기 획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집 필 | 강선호, 박애란, 박은경, 전현수(한국저작권위원회)

펴낸곳 | 한국저작권위원회

52851 경남 진주시 소호로 117

04323 서울 용산구 후암로107(게이트웨이하워 5,16층)

제 작 | (사)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

ISBN | 978-89-6120-578-8

978-89-6120-038-7 (세트)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바로 알기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